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응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971

발의연월일: 2021. 12. 17.

발 의 자:노웅래・김홍걸・이해식

김주영 · 송옥주 · 앙이원영

최인호 · 이장섭 · 윤준병

홍정민 · 신정훈 의원

(11일)

제안이유

환경오염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상하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환경책임보험제도가 지난 5년간 보상 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보험금 지급이 장기간 소요되며,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건강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실적이 미흡한 등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음. 또한, 재보험료 수입 확대로 적립액이 증가하고 있는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의 활용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보험가입자 및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사업 추진이 곤란한 실정임.

이에 정부가 실시한 역학조사 등을 통해 보험 가입 시설로 인한 점 진적 환경오염피해가 확인된 경우, 보험을 통해 신속히 보험금이 지급 될 수 있도록 손해액 등에 관한 조사를 보험자에게 요구하거나 조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의 용도에 손해조 사, 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중소기업 보험료 지원 등을 추가하여 환경책임보험 및 구제제도의 혜택을 확대하고 제 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구제계정 사업과 구제 계정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6조제1항).
- 나. 역학조사, 청원 건강영향조사 등 결과, 피해가 큰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이 보험자에게 손해조사를 요구하거나 손해조사를 실시하여 보험 자 등에게 통보하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 지).
- 다. 구제계정의 설치·운용 주체를 운영기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운영기관에 위탁함(안 제35조).
- 라. 구제계정의 용도에 손해조사, 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중소기업 보험료 지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 피해구제 및 피해 경감·복원에 필요한 비용 등을 추가함(안 제36조).
- 마. 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실태에 관한 조사 근거를 신설함(안 제38조의2).
- 바. 권한의 위임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자구 수 정함(안 제44조제1항).

법률 제 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36조제1항제6호의4 및 제7호의 용도로 환경오염피해구제계 정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

8의3. 제37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제18조제1항 중 "약정"을 "운영 등에 관한 약정"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손해 조사 및 손해액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결과 환경책임보험에 가입된 시설이 원인이 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경우로서 환경책임보험을 통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등(이하 "손해조사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조사등을 요구하였으나 보험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손해조사등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 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손해조사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손해조사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착수한 사실과 그 결과를 보험자,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손해조사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3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운영기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의 설치·운용에 관한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의2.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손해조사등
 - 6의3.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 안전관리 실태조사
 - 6의4.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료 지원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피해구제 및 피해 경감· 복원에 필요한 비용
 - ② 제1항제6호의4에 따른 용도는 구제계정 적립액이 제7조에 따른

배상책임한도 이상인 때로 한정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의 세부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제1항 중 "지방환경관서"를 "소속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 및 제38조의2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	제16조(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			
원회) ① 이 법에 따른 환경책	원회) ①			
임보험과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오염피해구제정				
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u>.</u>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8의2. 제36조제1항제6호의4 및			
	제7호의 용도로 환경오염피해			
	구제계정을 사용하는 것에 관			
	<u>한 사항</u>			
<u><신 설></u>	8의3. 제37조에 따른 환경오염			
	<u>피해구제계정 관리·운용에</u>			
	관한 사항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8조(보험자) ① 보험자는 위원	제18조(보험자) ①			
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과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u>약정</u> 을 체	운영 등에			
결하여야 한다.	<u>관한 약정</u>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20조의2(손해 조사 및 손해액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결과 환경책임보험에 가입된 시설이 원인이 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환경책임보험을 통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등(이하 "손해조사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것을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해조사등을 요구하였으나 보험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손해조사등에 착수하 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 이 손해조사등을 실시할 수 있 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손해조사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는 착수한 사실과 그 결과를 보 험자,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 ① 2 운영기관은 보장계약에 따른 보장금의 지급 및 구제급여 등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이하 "구제계정"이라 한다)을 설정· 운용할 수 있다.

- ② (생략)
- ③ <u>운영기관</u>은 구제계정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제계정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④ <u>운영기관</u>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환경오염 피해 구제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 ⑤ <u>운영기관</u>은 제4항에 따른 기 부금을 구제계정에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손해조사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다.
— 제35조(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 ①
환경부장관
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
.
④ 환경부장관
· ⑤ <u>환경부장관</u>
•

<신 설>

제36조(구제계정의 용도) 구제계 제36조(구제계정의 용도) ① ----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 도에 사용한다.

1. ~ 6.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7. 그 밖에 환경오염피해구제제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도를 유지·개선하는 데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 <신 설>

<신 설>

- ⑥ 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의 설 치 · 운용에 관한 업무를 운영기 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1. ~ 6. (현행과 같음)
 - 6의2.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손해조사등
 - 6의3.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 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 6의4. 「중소<u>기업기본법」에 따</u> 른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료 지원
 - 는 환경오염피해구제 및 피해 <u>경감·복원</u>에 필요한 비용
 - ② 제1항제6호의4에 따른 용도 는 구제계정 적립액이 제7조에 따른 배상책임한도 이상인 때로 한정한다.
- 제38조의2(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피해 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책임보 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저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해양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있다.

②・③ (생 략)

	<u>관리</u>	실	태에	관한	조기	사를	실	시
	할 :	수 9	있다.					
	2	제1호	항에	따른	환경	안전	[관	리
	<u>실</u> 태	에	관한	조사:	의 사] 부	대/	상 <u>,</u>
	<u>방법</u>	등	에 관	하여는	는 환	·경부	- 령	<u></u>
	로 >	정한	<u>다.</u>					
1	44조	:(권	한의	위임	및	위틱	 	1
	<u>소속</u>	-기국	<u> 란</u>					
		•						

②・③ (현행과 같음)